

2025년 세제개편안 - 내국추가세제도

지난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세제개편안에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Domestic Minimum Top-up Tax, DMTT)**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별 세제개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법령 개정안이며, 국회 심의 등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국추가세 관련하여 입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국추가세제도의 도입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기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하 국내 저율과세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금번 세제개편안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내국추가세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신설된 내국추가세제도는 기존의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 Tax, UTPR)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서 연결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면서, 국내에 저율과세 구성기업을 보유한 경우 내국추가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국외에 최종모기업이 있는 해외그룹의 국내구성기업(외국인투자기업) 뿐 아니라, (2)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내그룹의 경우에도 최종모기업을 포함한 국내구성기업이 내국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입법 초안 내용

이번에 발표된 내국추가세 입법 초안은 기존 글로벌최저한세 소득납입규칙, 소득납입보완규칙이 규정된 국조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될 국조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이 글로벌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된 내국추가세액은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됩니다.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그룹의 경우에는 국내 최종모기업을 포함한 국내 구성기업 간 합산을 통해 추가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 내국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제외한 금액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식 규정] ① 또는 ② 중 택 1

①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 규정

* 각 구성기업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규모에 비례하여 배분(대통령령)

② (지정배분)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

적용면제

- 전환기적용면제: 기존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가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경우 내국추가세 적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면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 영구적적용면제: 해당 규정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며, OECD에서 영구적 적용면제 규정 확정 후 세부내용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국추가세액 신고 및 납부

- 내국추가세액(추가세액배분액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일로부터 15개월(최소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이내에 내국추가세액(추가세액배분액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편, 국조법 개정안에는 베트남, 영국 등 타 DMTT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 신고구성기업 지정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신고 의무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적용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입법 방향성 및 추후 발표 예상 내용

개요

각국이 도입하는 내국추가세 제도는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합의한 각국 검토 절차(peer review) 등을 거친 후 적격소재국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로 인준을 받는 경우에 한해, 소득산입규칙, 소득산입보완규칙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내국추가세제도가 QDMTT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OECD 규정에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입법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OECD에서는 QDMTT 인준을 위해 각국 DMTT 규정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규정”과, 각국이 재량 하에 OECD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차이를 둘 수 있는 “재량규정”을 구분해 두었는데, 한국 정부는 재량규정에 대해서도 OECD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차이를 두지 않도록 입법 방향성을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방향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발표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 규정 관련

- 과세지분율: OECD 규정(소득산입규칙)은 MNE그룹의 보유 지분율만큼만 추가세액이 과세되나, QDMTT제도는 MNE그룹 보유 소유지분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구성기업에 대해 발생한 추가세액을 전액 과세

- 국가간 조세 배분 금지: OECD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상 모기업에서 현지 CFC 제도 등에 따라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세액은 해외자회사 소재국에 배분하지만, QDMTT목적으로는 배분 불가 (한편, 국내구성기업이 해외 소재 타 구성기업(모기업)에 지급한 배당에 대해 과세되는 국내 배당원천세는 QDMTT 소재지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로 인정)

재량 규정 관련

- 회계기준: 소재지국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으나, OECD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동일하게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국내회계기준이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
- 적용통화: 소재지국 국내 통화를 기준으로 추가세액 계산이 가능하나, OECD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동일하게 최종모기업의 통화로 계산하고 내국추가세 납부액만 원화로 환산하도록 규정
- 적용범위: 공동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투자기업, 무국적구성기업(Stateless Entities), 유동화회사(Securitization Entity)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나 OECD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동일하게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도 내국추가세 적용
- 추가세액 계산 방식 강화: 실질기반제외 소득 차감 배제, 추가 세액 계산 시 합산 단위의 세분화 등을 통해 OECD 글로벌최저한세 규정보다 더 많은 추가세액이 산정되도록 규정이 가능하나, OECD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

(*) 위의 예상 규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시사점

내국추가세 제도는 최종모기업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다국적기업그룹이 국내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을 보유한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외에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내구성기업 뿐만 아니라,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 최종모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내국추가세 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특히, K-IFRS를 적용하는 국내구성기업이 내국추가세 제도를 적용 받는 경우, **2026년 1분기 결산 시점부터 공시 목적으로 내국추가세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적기에 이행해야 합니다.

Key Contacts

If you have any inquiri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the key contacts of KPMG Korea listed below:

Tax 3		
Oh, Sang Bum	sangbumoh@kr.kpmg.com	02-2112-0721
Lee, Sung Wook	sungwooklee@kr.kpmg.com	02-2112-0946
Kim, Dong Hoon	dkim@kr.kpmg.com	02-2112-0938
Lee, Sang Moo	sangmoolee@kr.kpmg.com	02-2112-7899
Suh, Yu Jin	yujinsuh@kr.kpmg.com	02-2112-0930
Kim, Jung Eun	jungeunkim@kr.kpmg.com	02-2112-0283
Cho, Sang Hyun	sanghyuncho@kr.kpmg.com	02-2112-7687
Song, Hyung Woo	hyungwoosong@kr.kpmg.com	02-2112-0275
Min, Woo Kee	wmin@kr.kpmg.com	02-2112-6886
Park, Sang Hoon	spark17@kr.kpmg.com	02-2112-6672
Lee, Jin Wook	jinwooklee@kr.kpmg.com	02-2112-3476
Lee, Chang Hoon	changhoonlee@kr.kpmg.com	02-2112-6815
Kang, Sung Won	kang22@kr.kpmg.com	02-2112-6771
Baik, Chun Wook	cbaik2@kr.kpmg.com	02-2112-3339
Ryu, Su Seok	suseokryu@kr.kpmg.com	02-2112-6787
Park, Seong Kyun	seongkyunpark@kr.kpmg.com	02-2112-0455

[Privacy](#) | [Legal](#) | [Unsubscribe](#)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